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김경환 수석연구원

요약

■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기존 회사법의 틀을 상당 부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동 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같은 해 4월 14일 공포)한 제19차 개정 「상법」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개정은 상행위편에 합자조합이 신설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회사편과 관련된 것으로서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동 「상법」 개정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¹⁾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의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체로 재편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 2.

■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이 그 특징별로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²⁾

<표 1> 2011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기업의 자금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 제고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및 무액면주식의 도입(\$291, \$329) - 설립시 발행주식수 제한의 폐지(\$289②) -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 축소(\$299②) -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허용 및 자유로운 처분(\$341~\$343의2)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발행주식의 종류의 다양화 등(\$344~\$346) -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360조의24~26) - 자본금 감소제도의 개선(\$438②, \$439②) - 회계규정의 정비(\$446의2~\$457의2) 및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458~\$460, \$461의2) - 배당제도(\$462)·사채제도(\$469)·합병제도(\$523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IT화	회사 경영의 IT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영 수준을 세계화
	- 전자주주명부 도입(\$353의2) 및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368의4)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356의2, \$478③)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인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지원
	- 합작조합(2편제4장의2) 및 유한책임회사제도(3편제3장의2) 도입 - 유한회사제도(\$545, \$556, \$571, \$607) 개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의 정의 및 결격사유 명확화(\$382③) - 집행임원제도 도입(\$408의2~\$408의9) - 이사의 자기거래승인대상의 범위 확대(\$398①·②),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398③), - 이사의 책임 감경(\$400) 및 감사제도 개선(\$412③ 등)
상장회사 특례규정 신설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 편입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및 범위의 확대(\$542의3) -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전자적 공고방식 도입(\$542의4) - 소수주주권의 지분을 완화 및 보유요건 도입(\$542의5) -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 완화 및 집중투표 배제시의 의결권 제한(\$542의7) - 사외이사 설치 및 구성비율의 의무화(\$542의8) - 이해관계자와의 신용공여행위 금지 및 이사회 승인(\$542의9) -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및 설치의무화(\$542의10)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권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542의11·12)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 도입(\$542의13)
소규모 회사 창업절차의 간소화	소규모회사의 설립절차와 운영을 간소화함으로써 활발한 투자여건 등을 조성
	- 발기설립 시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 면제(\$292) - 발기설립 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318)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363) 및 감사 선임의무 면제(\$409)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p. 21~25.

■ 금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제3편 회사편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큰 변화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회사와 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의 편의가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2005년 입법작업이 시작된 이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하에서는 상기 두 제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함.

■ (집행임원제도) 개정 「상법」은 회사 운영 실무상 선임하여 오던 비등기임원(집행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래의 대표이사제도와 새로이 도입되는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출하고 이사와 마찬가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登記하여야 함.
-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이사와 같이 임기만료 후 연임은 가능하며,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집행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
-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
- 한편, 이사회는 집행임원과는 별개로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가짐.

■ 실무상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을 이미 활용하고 있어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기업들은 이사 수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단순 고용하여 전무, 상무, 상무보 등의 직함을 주어 집행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었음.
-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실무상 선임하고 있는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³⁾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p. 7~8.

■ 그러나 이러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개정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비등기임원 실무를 규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여부를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어 보험회사나 기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기본 골격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분리하여 감독권은 이사회가 가지되 업무집행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하는 집행임원에게 맡기는 것임.
- 즉, 개정 「상법」은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원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집행임원제도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임.⁴⁾
- 더불어 지금까지 정관을 개정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시행하겠다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⁵⁾
- 보험회사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 또는 감사는 ‘사실상 이사 또는 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로서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 (준법지원인제도) 개정 「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음.

- 기업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동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대다수 기업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음.

- 보험회사 또한 「보험업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개정 「상법」상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와는 그 범위·자격요건 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4) 권중호, 「2011년 개정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p. 18.

5) 김정호(2012, 4, 3), 「개정된 상법 회사편 시행을 앞두고」, 『매일경제』 인사이드 칼럼(<http://news.mk.co.kr>).

〈표 2〉 「상법」상의 준법지원인과 「보험업법」상의 준법감시인의 비교

구분	준법지원인(상법)	준법감시인(보험업법)
업무	준법관리	리스크관리, 재무관리, 준법관리
보고	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임면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임기	3년(상근)	-
자격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학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이에 따라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준법지원인 도입 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 하되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하고,
 -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는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함.
- 더불어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kiri](#)